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2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6.

발 의 자 : 이주영 · 이준석 · 윤재옥
김대식 · 천하람 · 김재원
조은희 · 황명선 · 김선민
남인순 · 이진숙 · 유용원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위험 임신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나, 이는 건강상의 고위험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·경제적 여건·언어 장벽·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·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신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.

현재,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,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,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체계하에서 근거 법령의 산재는 취약 산모가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이에 법령 내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‘취약임산부’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,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신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·

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(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7 신설).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“취약임산부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말한다.

가. 장애인인 임산부
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임산부

다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또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임산부

라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

마. 그 밖에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부

제1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7(취약임산부에 대한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·출산 및 그 자녀인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취약임산부 조기발굴 및 지속관리를 위한 상담 및 관리체계 구축
2.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
3. 장애·빈곤·국적·지역 등 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 취약요인에
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
4. 그 밖에 취약임산부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보건복지부령
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<u>“취약임산부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말한다.</u> <u>가. 장애인인 임산부</u> <u>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임산부</u> <u>다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또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임산부</u> <u>라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</u> <u>마. 그 밖에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</u>

<u><신 설></u>	<u>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</u> <u>으로 정하는 임신부</u> <u>제10조의7(취약임산부에 대한 지</u> <u>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</u> <u>약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</u> <u>임신·출산 및 그 자녀인 영유</u> <u>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</u> <u>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<u>1. 취약임산부 조기발굴 및 지</u> <u>속관리를 위한 상담 및 관리</u> <u>체계 구축</u> <u>2.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서비스</u> <u>연계</u> <u>3. 장애·빈곤·국적·지역 등</u> <u>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 취약</u> <u>요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</u> <u>지원</u> <u>4. 그 밖에 취약임산부의 안전</u> <u>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보건</u> <u>복지부령에 의해 필요하다고</u> <u>인정되는 지원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